

고려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2017.03.02. 제정

<인권센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고 한다.) 인권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②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란 인권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이하 “인권침해 등의 행위”이라 한다)를 말한다.
- ③ “고충민원”이란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위법·부당한 적극적·소극적 처분(사실 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체도로 인하여 본교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구성원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또는 본교 구성원간의 갈등 및 분쟁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 ④ “피해자”라 함은 인권침해 등의 행위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 ⑤ “가해자”라 함은 인권침해 등의 행위를 가한 사람을 말한다.
- ⑥ “신고인”이라 함은 인권침해 또는 고충민원의 발생을 인권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 ⑦ “피신고인”이라 함은 신고인에 의하여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되어 본교 인권센터에 신고된 사람을 말하며, 이외의 기타 경로로 인권침해 등의 혐의를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
- ⑧ “내담자”라 함은 인권침해 등 관련 문의가 있거나 고민을 풀고자 할 때 그리고 관련 정보가 필요한 경우 등을 이유로 상담을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 ⑨ “사건관련자”라 함은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 등 당해 사건의 관련자를 말한다.
- ⑩ “관계부서”라 함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⑪ “본교 구성원”이라 함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의 정관, 본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정관, 본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본교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2장 구성과 조직

제4조(구성)

- ① 센터에는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는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센터에는 인권침해 등의 행위에 대한 상담·조사, 연구, 교육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직원을 둔다.

제5조(센터장)

- ①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조직)

- ① 센터에는 인권상담실, 인권연구실, 인권교육실을 둔다.
- ② 각 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권상담실: 성희롱·성폭력 이외의 인권침해 행위 및 고충민원의 상담, 조사, 피해자의 구제, 예방, 그밖에 이와 관련된 연구의 수행
 2. 인권연구실: 본교 구성원의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국내외 인권연구 및 인권 관련 학술교류 활성화
 3. 인권교육실: 교내 각종 차별 및 인권침해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및 학내 구성원에 대한 인권의식 및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육제공

제7조(운영위원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센터의 사업·운영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② 이 규정 및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 ③ 학내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업무
- ④ 그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겸임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전임교원, 전임직원 및 재학생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이를 총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④ 교무처장, 학생처장 및 총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기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심의위원회 위원과 겸임할 수 있다.

제3장 사건의 조사 및 처리

제10조(조사팀) 인권침해 등의 행위 관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팀을 구성한다.

제11조(조사팀의 구성)

- ① 조사팀은 당해 사건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전문인력 1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 6인 이하의 팀원으로 구성하며, 센터장이 겸임할 수 없다.
- ② 조사팀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 ③ 조사팀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 ④ 조사팀원의 임기는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팀의 소집에서부터 사건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제12조(조사팀의 임무) 조사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① 인권침해 등의 행위 관련 사건 조사
- ②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 ③ 제1호의 사건 조사가 미진한 경우, 보충조사의 요청
- ④ 조사 내용을 심의위원회에 회부

제13조(조사팀의 회의)

- ① 조사팀의 회의에는 조사팀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팀원이 출석하여야 한다.
- ② 센터장과 전문 인력은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조사팀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 ③ 조사팀은 사건의 사실관계 및 해결 방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4조(조사의 방법)

- ①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의 행위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및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팀에 사건을 회부한다.
- ② 조사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사건 관련자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사건 관련자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출 요구
 3. 사건 관련자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 ③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센터에 소명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위원회) 조사팀의 조사 내용을 심의하고 징계 요청 및 기타 필요한 조치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임명한다.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전임교원, 전임직원, 본교 학생, 외부 인사 가운데 센터장이 임명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임무) 심의위원회는 본교 인권침해 등의 행위 관련 사항 및 센터장이 사안의 중대함을 인지·의견을 요청한 사안에 대한 조사팀의 조사 내용을 심의하며 징계의 요청 및 기타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18조(심의위원회의 회의)

-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기타사항

제19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의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0조(관계기관의 협력의무) 본교의 관계기관 및 부서는 센터의 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